

## 국제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 뉴스레터



### ASEAN 화장품 지침(ACD) 성분 부록 개정:4개 추가·6개 수정·1개 삭제



ASEAN Cosmetic Committee (ACC)와 ASEAN Cosmetic Scientific Body (ACSB)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42차 ACC 회의에서 ASEAN Cosmetic Directive (ACD)의 성분 부록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지 및 제한 성분이 조정되었으며, 일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삭제되었다.

아세안 화장품 지침은 금지 성분, 제한 성분,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의 5개 성분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ACC와 ACSB는 연 2회 정기 회의를 통해 EU 규제 개정 사항 검토 및 아세안 지역 내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ACD 부록 II, III, VII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는 아세안 화장품 성분 규제 체계를 최신화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부록 II (금지 성분 목록): 6개 항목 수정, 2개 물질 추가
수정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D4) CAS 번호 추가
	석유석탄타르 및 천연가스계 유래 물질 4종 유해성 기준 조정
	특정 아크릴레이트 성분 예외 조항 삭제
추가	4-메칠벤질리덴캄퍼(4-MBC), 미코나졸 및 미코나졸 질산염 추가
부록 III (제한 성분 목록): 2개 물질 추가	
추가	제니스테인 및 다이드제인 최대 허용 농도 설정
부록 VII (화장품에 허용되는 자외선 차단제 목록) : 1개 물질 삭제	
삭제	4-MBC(d-형) 삭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updates-to-asean-cosmetic-directive-acds-ingredient-annexes-4-additions-6-revisions-and-1-deletion>

## 프랑스, 소비자 제품 내 PFAS 규제 세부 시행 규칙 발표, 2026년 1월 시행

2025년 12월 28일 프랑스 생태전환생물다양성기후및자연국제협상부는 소비자 제품 내 과불화알킬물질(PFAS)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과 예외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2025-1376호를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은 화장품을 포함한 다양한 소비재에 대한 PFAS 규제를 본격화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2025년 2월 개정된 프랑스 환경법(L524-1조 및 L524-2조)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PFAS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제시한다.



적용대상은 PFAS를 함유한 화장품, 스키 왁스, 섬유, 신발, 방수제 등의 제조업체, 수입수출업체 및 유통업체 전반이다. 법령은 제품 내 PFAS 잔류 농도 한도를 ▲개별 25ppb, ▲총 250ppb(전구체 포함), ▲고분자를 포함한 PFAS의 경우 총 불소량 기준 최대 50ppm (50mg F/kg 이하)로 제한했다. 예외 적용 대상으로는 PFAS 잔류 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보호 장비(PPE)와 관련 방수제, 군보안 장비, 재활용 소재 함량 20% 이상인 의류 및 신발 등이 포함됐다. 산업용 기술 섬유는 필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농도 제한 없이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PFAS 함유 제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유통 및 수출이 가능하나,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제조 시점과 관계없이 시장 유통과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france-releases-implementation-rules-for-its-pfas-ban-in-consumer-products>

## 중국 NMPA, 화장품 안전기술기준(STSC)에 신규·개정 기준과 시험법 27건 반영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6년 1월 12일, 화장품 안전기술기준(STSC, 2015년판)에 총 27건의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을 개정 도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생물 및 유해물질 기준 강화, 화장품 금지제한 성분 조정, 신규 시험 방법 추가 및 기존 시험 방법 개정이 포함됐다.

NMPA가 STSC에 신규 및 개정 기준과 시험 방법을 반영하는 3건의 공고를 발표함에 따라 ▲화장품의 미생물 제한 기준과 다이옥산 제한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7개 물질의 화장품 금지 목록 추가는 항목별로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걸쳐 순차 적용되고 ▲일부 금지제한 성분과 자외선 차단제, 염모제에 대한 사용 조건 및 최대 허용 농도가 2028년 1월 1일부터 강화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리화학적 시험 및 독성 시험 방법과 인체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4건의 신규 시험 방법과 5건의 기존 시험 방법 개정이 STSC에 반영된다. 시행일은 항목별로 2026년 7월 1일과 2027년 1월 1일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국 내 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의 국제 수준과의 조화가 강화되고, 원료 및 제품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nmpa-announces-inclusion-of-18-standards-in-cosmetic-safety-technical-specifications>

# 영국, 화장품 규정 개정...17개 성분 금지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 표시 강화

영국 정부가 화장품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17개 화장품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에 대한 표시 기준을 강화한다. 해당 조치는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은 2025년 10월, 17개 화장품 성분의 사용 금지와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 표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규정 초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였다. 이후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규정이 「The Cosmetic Products Regulation (EC) No 1223/2009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 (Amendment and Transitional Provisions) Regulations 2026」이라는 제목으로 2026년 1월 15일 의회에 제출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금지 성분 목록: 17개 물질 추가

4-메틸벤질리덴캠퍼(4-MBC)		기타 CMR 물질 16종
분류	내분비계 교란 및 유전 독성 우려 물질	발암성·돌연변이 유발성·생식 독성 물질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2026년 8월 15일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출시 제품 2027년 1월 14일까지 판매 허용	시행일 이전 출시 제품 2027년 2월 14일까지 판매 허용

## 2. 표시 기준 강화

포름알데히드 방출 보존제	
분류	완제품 내 포름알데히드 0.001% 초과 시 "releases formaldehyde" 경고 표시 의무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출시 제품 2027년 1월 14일까지 판매 허용

## 3. 자외선 차단제 목록: 1개 물질 삭제

4-메틸벤질리덴캠퍼(4-MBC)	
분류	금지 성분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로 사용 금지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출시 제품 2027년 1월 14일까지 판매 허용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uk-amends-cosmetic-regulations-bans-17-ingredients-and-updates-labelling-for-formaldehyde-releasing-preserved>

## EU, 화장품 CMR 물질 규제 강화...15종 성분 2026년 5월부터 사용 금지



유럽연합(EU)이 최신 CMR(발암성·돌연변이 유발성·생식독성) 분류 기준을 반영해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6년 5월부터 화장품에 15가지 CMR 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 외에도 금지 성분, 제한 성분, 허용 색소 및 보존제 목록 등 화장품 성분 관련 4개 부속서가 동시에 수정된다.

EU는 지난 2025년 5월, 최신 CMR 분류에 따라 화장품 성분 규제를 개정하는 초안을 WTO에 통보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3일 위원회 규정(EU) 2026/78로 공식 채택됐다.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2일부터 발효되며, 실제 적용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금지 성분 목록: CMR 물질 15종 추가 및 기존 항목 일부 정비삭제
2. 제한 성분 목록: 2개 물질 추가 (마이크론 크기 은, 핵심 살리실레이트 추가)
3. 허용 착색제 목록: 1개 항목 수정 (마이크론 크기 은 사용 기준)
4. 허용 보존제 목록: 1개 항목 수정 (o-페닐페놀 사용 기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URL: <https://cosmetic.chemlinked.com/news/cosmetic-news/eu-to-ban-15-cmr-substances-in-cosmetics-starting-may-2026>

Provided by  
**CHEMLINKED**



**REACH24H**



### CONTACT

Email: [korea@reach24h.com](mailto:korea@reach24h.com)

Phone: 02-6245-1610